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00

발의연월일: 2020. 10. 22.

발 의 자:이탄희·강병원·강준현

강훈식 • 고민정 • 고용진

권인숙 · 김경만 · 김상희

김성환 · 김승원 · 김영배

김철민 · 남인순 · 민형배

박광온 • 박찬대 • 오영환

우원식 • 유기홍 • 유정주

윤영덕·윤영찬·이소영

아줌(비) · 이용빈 · 이용우

이해식 · 장경태 · 장혜영

정정순 · 정춘숙 · 주철현

진성준 · 최혜영 · 홍기원

홍정민·황운하·황 희

의원(3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와 달리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

의 구성에 있어 학부모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위원의 성(性) 비율에 대한 규정도 없어 징계사건의 심의에 있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 처벌 수위가 낮은 편임. 2019년 성비위 교사에 대한 배제징계(파면, 해임)는 사립학교(36%)가 국·공립학교(46%)보다 10%p 낮음. 또한 사립학교는 성비위 후 교단으로 돌아오는 교원의 수가 2014년 7건에서 2019년 66건으로 약 9.4배 증가하고 있음. 징계의 효과가 별로 없다보니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 건수 자체도 2014년 12건에서 2019년 104건으로 약 8.6배 증가함.

이에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 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위원 구성의 다 양화를 통한 공정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자 함. 그리고 본 법안 통과 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상 공립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구성도 학부모 위원 최소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될 것으로 기대 함(안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한,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징계의결서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중 "5명"을 "9명"으로, "9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 4.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6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징계의결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62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2條(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第62條(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	②
회는 <u>5명</u> 이상 <u>9명</u> 이하의 위	<u>9명</u> <u>15명</u>
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3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	
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	
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
	<u>원</u>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4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	
한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
	<u>할 것</u>
<u><신 설></u>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

⑤ (생략)

第66條(징계의결) ① ~ ④ (생 략) <u><신 설></u> <u>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u>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⑤ (현행과 같음)
-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임용권자는 교원정계위원회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정계의결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